

芳林2洞우영타워아파트被害에 따른請願 審 查 報 告

1994년 11월
都市建設委員會

1. 審査經過

가. 請願人 姓名 : 이현삼외 68명

住所 : 광주직할시 서구 방림동 24-1(우영타워ATP)

나. 紹介議員 : 尹奉根議員

다. 接受日字 : 1994年 10月 13日

라. 回附日字 : 1994年 10月 13日

마. 上程日字

○ 第36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 臨時會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 (94年 10月 19日) 上程

— 청원취지설명·검토보고·집행부 추진경위청취·질의답변

第2次 都市建設委員會 (94年 10月 22日) 上程

— 시공회사 무등건설대표 진술·현장조사 활동

第3次 都市建設委員會 (94年 10月 24日) 上程

○ 第36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 臨時會 (閉會中)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 (94年 10月 27日) 의견서 채택

2. 請願 要旨

○ 광주직할시 서구 방림동 산 4-1번지 외 31필지상 광주동일실업고등학교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근 우영타워APT (70세대)의 벽에 심한 균열과 소음 먼지등으로 어린아이들 까지 경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대책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방림2동24-1(우영타워APT) 이현삼외 68인이 1994년 10월 13일 당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입니다.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李鈺來)

○ 소개 의원(윤봉근 의원)의 의견 요지는 동일실업고등학교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 단독주택 피해주민 30여 세대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하여 회사측에서 보상·보수를 마무리했으나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때문에 회사에서 대책도 세워주지않고 있으며 건축허가 기관인 서구청도 사전 안전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어 문제 발생으로 인한 아파트 피해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요지이었습니다.

○ 본 청원 내용을 검토한바 주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어 구제를 요구한 청원으로 심사 결과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감독권자인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으로 하여금 시공 회사측과 피해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처리토록 서구청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質疑答辯 要旨 : 생략

5. 討論 要旨 : 없음

6. 審査 結果

○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7항 의견서 첨부 서구청장이 처리토록 이송

7. 審査 意見書

본 청원은 94년 10월 13일 광주직할시 서구 방림동 24-1 우영타워APT 이현삼외 68인과 방림2동 윤봉근의원이 소개한 광주동일실업고등학교 신축공사로 인하여 방림2동 우영타워APT 피해에 따른 구제를 요구한 청원으로

○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 해당 국·과장과 시공사(주.무등건설) 대표 그리고 청원인 대표를 출석시켜 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조사 활동 그리고 소개위원의 의견 청취 및 토론을 거쳐

○ 94년 10월 27일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 방림동 소재 우영타워아파트는 현재 내·외부벽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원인규명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위원회가 여러 상황 및 진술을 토대로 분석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동일실업고등학교 신축과 관련 발파및 공사 차량으로 인해 소음·분진·교통불편 등이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시공사인 무등건설이 피해 보상을 하도록 서구청은 조치할 것이며

2) 우영타워아파트 건물의 내·외부 벽의 균열이 확인되었으나 상호 입장이 상이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 발파 및 차량 통행 그리고 교량건설시 파일작업등으로 인해 영향을 주었는지 안전진단을 동일실업고등학교 시공사인 무등건설의 부담으로 의뢰할 것이며 안전진단결과 우영타워아파트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판명되면 무등건설측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결과에 따라 상응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조치.

또한 전문기관 선정은 무등건설과 주민대표가 합의하여 선정한다.

3) 건축공사 중지등 가치분 신청건은 현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조사중이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4) 광주동일실업고등학교 신축공사로 인하여 주변 우영타워아파트 피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후 상임위원회 활동 또는 필요시 조사특위를 구성기로 한다.

이에 의견서를 채택함.